

보험금 청구 준비서류

보장담보	준비서류
공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험금청구서 (양식) • 보험금청구 위한 필수동의서 (양식) • 본인확인 위한 신분증 사본 • 동물등록증 사본 • 보험금 수령 위한 통장사본
상해 및 질병치료비 (피부병 확장담보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료내역서 (입·통원기간, 상병명 포함) • 영수증
반려동물 배상책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고경위서 (양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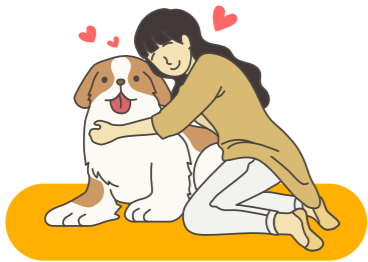
보험금 청구절차

전담 콜센터 02-318-1355 통한 접수

FAX : 02-318-1354 E-MAIL : kimspromi@naver.com

※ 보험금청구서, 보험금청구 위한 필수동의서, 사고경위서 양식은 **전담 콜센터** 또는 **DB손해보험 공식 홈페이지(<http://www.idbins.com>)** 보상 > 필요서류안내'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의 유기견 입양정책을
DB손해보험이 함께합니다!



유기견을 어디서 입양할 수 있나요?

서울 25개 자치구 동물보호담당부서 및 지정 동물보호센터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 유기동물 공고란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

마포구 매봉산로31(상암동), 에스플렉스센터 지하 1층
Tel. 02-2124-2839 (www.animal.go.kr)

서울유기동물입양센터

종량구 용마산로 139나길 83(신내동)
Tel. 02-6958-6224 (www.saac.kr)

서울 자치구 유기동물 입양센터

강동 리본센터(reborn)

강동구 양재대로81길 73 (성내동)
Tel. 070-4163-7350 (www.reborncenter.org)

서초 동물사랑센터

서초구 양재천로19길 22 (양재동, 숨빌딩)
Tel. 02-6956-7980 (www.seocho.go.kr/site/animal/main.do)

노원 반려동물문화센터 댕댕하우스

노원구 수락산로 258 (상계동) 호성빌딩 1층
Tel. 02-933-8500 (www.nowonhouse.kr)

유기견 안심보험을 어떻게 가입할 수 있나요?

- 1 서울시 동물보호·입양센터에서 입양 시 동물등록번호를발급 및 등록
- 2 서울시 유기동물 안심보험 가입신청서 작성
- 3 프로미 반려동물보험 가입이 완료되면 가입증명서, 약관 등이 SMS(LMS)로 송부

가입/보상문의

02-318-1355 이용시간: 평일 오전9시 - 오후 6시

홈페이지 www.kimspartners.co.kr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유기견 입양을 망설이고 계시나요?

유기견 입양 시 서울시에서 유기견 안심보험을
1년간 무상지원 합니다.

• **보험가입**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가능합니다.

• **보험기간**은 가입신청일로부터 1년입니다.

※ 예산조기소진 시 보험가입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보험가입 불가시 안내문자 발송)



서울시 유기견 안심보험 프로미 반려동물보험 특징

- 1 유기견 입양가족의 치료비 부담을 최소화 하기 위한 보험담보구성
- 2 반려견 상해, 질병(피부병, 구강질환 포함)에 대한 수술, 입원, 통원치료비 보장
- 3 타인이나 타인 소유의 반려동물에게 입힌 손해 보장

※ 입양하시는 유기견이 맹견에 해당되는 경우 가입이 불가합니다.

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서울시 유기견 안심보험 프로미 반려동물 보험

“유기견의 가족이 되어주세요”

“유기견에게 새 삶을 선물해주세요”

“사지 말고 입양하세요”



상품 보장 내용 (DB손해보험 프로미 반려동물보험II)

보장담보	세부항목	보상한도	총보상한도	공제금액	보상비율
상해 및 질병치료비 (피부병 및 구강질환 확장담보 포함)	입원치료비	1일당 15만원	1천만원	1일당 3만원	60%
	통원치료비	1일당 15만원		1일당 3만원	60%
	수술치료비	1회당 150만원 (연 2회 한도)		1회당 3만원	60%
반려동물 배상책임	타인 또는 타인소유 반려동물에 입힌 손해	1사고당 5백만원	5백만원	1사고당 3만원	100%

보상 예시

사례1 반려견이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해 동물병원에서 입원치료(3일) 및 수술(1회)을 받아 총 250만원의 치료비를 부담한 경우

	보상한도	실제치료비	공제금액	보상비율	적용후 (공제금액 및 보상비율)	보험금
입원 (3일)	450,000원(150,000원X3일)	2,500,000원	90,000원(30,000원X3일)	60%	1,428,000원	1,428,000원
수술 (1회)	1,500,000원		30,000원			
계	1,950,000원	2,500,000원	120,000원	60%	1,428,000원	1,428,000원

사례2 반려견이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해 동물병원에서 통원치료(2일)를 받아 총 25만원의 치료비를 부담한 경우

	보상한도	실제치료비	공제금액	보상비율	적용후 (공제금액 및 보상비율)	보험금
통원 (2일)	300,000원(150,000원X2일)	250,000원	60,000원(30,000원X2일)	60%	114,000원	114,000원
계	300,000원	250,000원	60,000원	60%	114,000원	114,000원

보상하는 손해

담보명	보상하는 손해
상해 및 질병치료비 (피부병 및 구강질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반려동물에게 상해 또는 질병이 발생하여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국내에서 수의사에게 치료를 받은 때에 1천만원 한도 내 아래와 같이 보상합니다. (자기부담금 3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원치료비 : 1일당 15만원 한도 통원치료비 : 1일당 15만원 한도 수술치료비 : 1회당 150만원(연간 2회) 한도 보상방법 : [(피보험자가 부담한 치료비 - 적용 자기부담금) × 60%]과 '적용 지급액 한도액' 중 적은 금액 <p>자기부담금의 경우 입원 및 통원치료비는 1일당, 수술치료비는 1회당 치료비에서 차감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만료일로부터 180일 이내의 치료비는 보상합니다. 단, 사고일 또는 발병일부터 365일 이내의 치료인 경우에 한합니다.
반려동물 배상책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반려동물의 행위에 기인하는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장해(상해, 질병 및 그로 인한 사망) 및 타인 소유의 반려동물에 손해를 입혀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5백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자기부담금 3만원)

※ 자세한 내용은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상하지 않는 손해

- 대한민국 이외의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 및 손해
- 반려동물을 범죄행위, 경주, 수색, 폭약탐지, 구조, 투견, 실험 및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이용함으로써 발생한 손해
- 상병명을 알 수 없는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
- 대상 반려동물의 정상적인 임신·출산, 제왕절개, 인공유산과 관련된 비용 및 산 후 증상 치료 비용
- 중성화, 불임 및 피임을 목적으로 한 수술 및 처치에 따른 비용
- 손톱절제(머느리발톱 제거 포함), 유치잔존, 잠복고환, 제대허니아(배꼽부위탈장), 항문낭 제거 등 건강동물에 실시하는 외과수술 및 기타 검사 또는 점안, 귀 청소 등의 관리 비용
- 한의학(단, 침구는 제외합니다.), 인도의학, 허브요법, 아로마테라피 등의 대체의료
- 슬관절탈구, 고관절탈구, 슬관절형성부전, 고관절형성부전 또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질병 또는 상해
- 귀성형, 꼬리성형, 성대제거 등 미용성형을 위한 수술 및 처치에 따른 비용
- 안락사 비용, 시체처치 및 해부검사, 장례비, 이장비 등 사후에 필요한 비용

※ 자세한 내용은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보험계약은 서울시청을 보험계약자, 서울시에서 발생한 유기견을 입양한 분 중 보험가입을 신청한 고객을 피보험자로 하는 단체계약입니다. 보험료는 전액 서울시청에서 부담합니다.

1. 보험계약 가입 시 유의사항

보험계약을 청약할 때는 보험 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 반려동물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인터넷 등을 통해 상품설명서와 보험약관을 확인해 보거나 설계사, 상담원에게 수령 후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보험계약은 서울시청을 보험계약자로서는 단체보험이므로 보험계약자에 대한 유의사항 안내입니다.

2. 보험계약의 무효

계약 체결 시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 및 반려동물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보험계약자에게 돌려드립니다.

3. 가입자의 계약 전, 후 알릴 사항

가입자의 계약 전 알릴 사항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등은 보험계약 청약 시 가입에 필요한 내용에 대하여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고, 보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가입자의 계약 후 알릴 사항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아래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청약서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변경이 생겼음을 알았을 때
 -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다른 보험자와 체결하고자 할 때 또는 이와 같은 계약이 있음을 알았을 때
 - 반려동물을 양도할 때
 - 위 이외에 위험이 뚜렷이 변경되거나 변경되었음을 알았을 때

4. 단체보험 계약

본 보험계약은 서울시청을 보험계약자, 서울시에서 발생한 유기견을 입양한 분 중 보험가입을 신청한 고객을 피보험자로 하는 단체계약입니다. 보험료는 전액 서울시청에서 부담합니다. 따라서 단체계약임에 따라 청약철회 및 품질보증 제도 대상이 아니며, 또한 연말 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5. 해지환급금 및 만기환급금

본 계약은 해지환급금이 있으나 만기환급금이 없으며, 보험계약 대출제도 이용은 불가합니다. 해지환급금은 보험계약자에게 돌려드립니다.

6. 비례보상에 관한 사항

계약에서 보장하는 치료비, 배상책임 담보는 실제 손해액에 기초하여 보상하는 보장의 경우,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포함)이 있을 때에는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 이 계약에 의한 보상책임액의 상기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상합니다. 반드시 계약체결 이전에 반려동물에 대한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예금자보호 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DB손해보험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계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보호하지 않으며 본 보험계약은 이에 해당합니다.)

8. 모집질서 및 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

보험계약과 관련한 특별이익제공 행위 및 보험모집질서 문란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보험모집질서 위반행위 신고센터

☎ : 국번 없이 1332

🌐 : www.fss.or.kr

9. 상담 및 보험분쟁조정 안내

가입한 보험에 관하여 상담이 필요하거나 불만사항이 있을 때에는 먼저 저희 회사로 연락 주시면 신속히 해결하겠습니다.

☎ : 1588-0100

🌐 : www.idbins.com → 고객센터 → 전자민원 접수

저희 회사의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센터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 국번 없이 1332

🌐 : www.fss.or.kr

10. 금융감독원 보험범죄 신고센터 안내

보험범죄는 보험사기방지법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죄)에 의거하여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보험범죄를 교사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1588-3311

🌐 : www.fss.or.kr 인터넷보험범죄신고

<금융소비자보호법에 관한 사항>

· 당사는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